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8일, 김영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소위원회(2026.04.29.)

상정, 심사, 의결(원안)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4.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환의원)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으므로,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생 략)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 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 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 방교부세법」 <u>제5조제2항</u> 의 규 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 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 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 ----- ----- ----- ----- ----- <u>제5조제3항</u> ----- ----- ----- -----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